SAMC | LAW REVISION

1. 한·중미 FTA 발효 대비 C/O 유효기간 등 정한다

한·중미 FTA 협정 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한다. 협정 상대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3일 입법 예고했다.

Read More

2. "수입 주류 폐기 시 용기는 재활용할 수 있어요"

향후 변질,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 주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해당 용기는 재활용하게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방지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28일 입안 예고했다. 세관장이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Read More

3. 多세율 원재료의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방법' 개정

관세청은 多세율 원재료의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방법'을 개정해 전년도 수입이 없는 경우 ① 직전 3개월간 수입한 전체 물량의 세율별 비중, ② 수출이행기간(2년) 내 수입한 전체 물량의 세율별 비중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관세환급 비중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세율별 비중 조정한 이후의 환급방법을 명확화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첫걸음 뗀 '한·메르코수르 TA'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 4개국의 무역협정(TA) 제1차 협상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협상이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 무역기술장벽, 경쟁,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에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알려졌다.

Read More

2. 세관에 제출하던 2만여 종이문서 "Bye"

정부기관만 사용하던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행정안전부가 9월 3일부터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인 '문서24'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관세청도 해당 서비스를 관세행정 업무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문서24'를 활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문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Read More

3. 정부, 對日 자동차 부품업계 R&D에 45억 긴급 지원

정부가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영 안정과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을 돕기 위해 對日 자동차 부품 수출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부품 기술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올해 45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한·일 간 밀크런(Milk Run) 물류시스템을 활용해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려는 중소·중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월 3일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복잡한 원산지 판정 'FTA-PASS'가 도와드립니다

효율적인 원산지 증명·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보급한 통합 원산지관리 소프트웨어 FTA-PASS에 원산지 간편 판정 시스템이 추가되는 등 일부 기능이 개선됐다. 관세청은 인력·정보 부족으로 원산지 판정 및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에 원산지 간편 판정 시스템을 새로 추가하고, 품목분류 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도 강화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Read More

2. 對베트남 김 수출 시 상호대응세율 없는 '한·베트남 FTA' 활용

최근 WCO HS 위원회가 조미김의 품목분류를 제2106.90호(기타의 조제식료품)에서 제2008. 99호(식물의 기타 조제품)로 변경했다. 이에 관세청은 한·ASEAN FTA 협정국에서 조미김에 대해 제2008.99호에 해당하는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이러한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9월 6일 안내했다. 특히 베트남으로 조미김을 수출하는 경우 상호대응세율 제도가 없는 한·베트남 FTA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ad More

3. 터키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 직물류 C/O 발급 시 유념하세요

국내 수출기업이 한·터키 FTA를 활용해 터키로 수출한 직물류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세관은 對터키 직물류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8월 31일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을 제작·배포했다. 서울세관은 직물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오인하거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TREND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 개정고시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한다. 녹차출출물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의 일일섭취량을 300mg으로 설정하고 , 프로바이오틱스의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다.

Read More

2.「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예규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이 예규 제정되었다. 해외작업장 등록 시 필요서류는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점검한 점검표 혹은 위생 점검 결과 사본,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해외작업장의 영업에 관한 인허가 서류 등이 있다. 식약처는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한다.

Read More

3.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검사항목은 방사능(요오드, 세슘)이다. 검사대상 식품은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 채가공품이며, 대상 국가는 5개국으로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핀란드이다. 시행기간은 2018년 10월 22일 부터 2019년 10월 21일 까지 일년간 시행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ERTIFICATION TREND

1.「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 되었다. 주요내용은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5종)을 신규로 지정하고, 화학물질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독물질의 혼합물 함량범위 등을 변경 한다. 또한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 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Read More

2.「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의 분류·표시에 대한 고시이다. 주요내용은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2-디메틸-3-(1-프로펜-1-일)사이클로프로판카복실산, 텅스텐산 비스(알킬(C=11~14) 가지형 및 선형)아민, 2-하이드라진일벤조티아졸, 등 신규 15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이다.

Read More

3.「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에 따라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제한물질로 지정 하고, '건축용 방수바닥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1년 6개월 후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년 후부터 시행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